

EU 역외보조금 규정의 시행 경과와 대응 방안 (EU집행위 검토 절차)

I. 들어가며

EU 역외보조금 규정(Foreign Subsidies Regulation, 이하 "FSR")이 시행된 지 2년이 경과했습니다.¹⁾ 법무법인(유) 율촌 국제통상팀은 현재까지 국내 기업을 대리하여 FSR 사전신고와 본신고를 수행한 경험을 토대로 FSR의 시행 경과와 대응 방안에 대한 Legal Update를 발송해드리고 있으며, 금번 뉴스레터에서는 공공조달 사전신고 이후 EU집행위의 검토 절차와 검토 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II. EU집행위의 조직과 역할

공공조달과 관련한 FSR 신고는 입찰 공고 및 집행을 담당하는 조달기관(contracting authority)에 제출되지만,²⁾ 해당 신고를 접수·심사하고,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권한은 전적으로 EU집행위 소속 성장총국(이하 "DG GROW")³⁾에 있습니다. DG GROW는 EU의 산업 경쟁력, 기업 환경, 공공조달, 내수 시장 통합 등을 관장하는 핵심 조직으로, FSR 신고 절차에 있어서는 유일하게 실질적인 심사 및 판단 권한을 가진 기관이자, FSR을 강제하고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입니다.⁴⁾

FSR 시행 2년차인 현재, 공공조달 관련 FSR 신고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2025. 4. 말까지 접수된 공공조달 관련 FSR 선언서/신고서 접수 건이 2,000건을 초과하였으며, 이 중 약 85%가 선언서(declaration)⁵⁾ 제출 건, 나머지 15%가 정식 신고(notification) 건으로 파악됩니다. 이들 신고는 주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주요 EU 회원국에서 진행된 400건 이상의 공공입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폭발적인 신고량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수행하기 위해, DG GROW는 최근 역외보조금과(Foreign Subsidies Unit)라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였습니다.

Related Areas

국제통상
국제중재 및 국제소송
국제거래
수입규제

Contact

백운재 변호사
02-528-5473
yjbaek@yulchon.com

안정혜 변호사
02-528-5306
jhahn@yulchon.com

박소영 변호사
02-528-5670
soyoung@yulchon.com

유대형 변호사
02-528-6606
dhyoo@yulchon.com

1) FSR은 2023. 7. 12.부로 시행되었습니다.

2) FSR 이행규정 제3조 제2항

3) 정식 명칭: Directorate-General for Internal Market, Industry, Entrepreneurship and SMEs(역내 시장, 산업, 창업 및 중소기업 사무총국)

4) 조달기관은 FSR 신고서의 공식 제출 창구로서 기능할 뿐, 신고서의 수리 여부나 심사 진행에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5) 사전신고 대상이 되는 재정적 기여가 없는 경우 선언서(Declaration)를 제출함(FSR 제5조 제2항).

III. EU집행위의 검토 절차

1. 조달기관을 통한 신고서 전달

입찰자가 조달기관에 공공조달 사전신고를 제출하면, 해당 기관은 이를 EU집행위 산하 DG GROW로 이관합니다. 규정상 이 이관은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하나,⁶⁾ 조달기관의 재량에 따라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1단계 예비검토 (Preliminary Review)

단일 입찰 절차(single-stage procedure)의 경우, EU집행위는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영업일(working days) 내에 예비검토를 완료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해 최대 10영업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⁷⁾

다단계 입찰 절차의 경우, 최초 입찰 신청서 제출시 1회 제출, 최종 단계에 이르러 최종 신고서를 제출(2회)합니다.⁸⁾ EU집행위는 최초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예비검토를 실시한 후 예비검토를 종료하거나 심층 조사를 개시하는 결정 없이 예비검토를 중단합니다. 최종입찰과 함께 새로운 사전신고를 접수하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예비검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⁹⁾

EU집행위는 역내 시장 왜곡의 정황이 불충분한 경우 예비검토를 종결(close)하지만, 역내 시장 왜곡의 정황이 충분한 경우에는 심층조사(in-depth investigation)를 개시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3. 2단계 심층조사 (In-depth Investigation)

단일 입찰 절차의 경우, EU집행위는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10영업일 동안 심층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20영업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¹⁰⁾

다단계 입찰 절차의 경우, 최종입찰 시 제출된 사전신고를 접수한 날 최대 90영업일 동안 심층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예비검토와 심층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입찰 절차는 중단없이 계속될 수 있지만, 최종 낙찰자는 선정될 수 없습니다.¹¹⁾

4. 직권조사 (Ex Officio Investigation)

사전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DG GROW는 자체 판단 또는 기업의 제소에 따라 직권조사를 개시할

6) FSR 제29조 제2항

7) FSR 제30조 제2항

8) FSR 제29조 제1항

9) FSR 제30조 제6항

10) FSR 제30조 제5항

11) FSR 제32조 제1항

수 있습니다. 이는 역내 시장 왜곡이 의심될 때 발동되며, 10년 전까지 받은 보조금에 대해 직권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¹²⁾

5. 사전협의(Pre-notification Contact)의 중요성

EU 집행위는 정식 신고 전 DG GROW와 사전협의(pre-notification contact)를 거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¹³⁾ 이는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불완전 신고 및 절차 지연 위험을 줄이고 정보 제출 면제(waiver) 가능성도 열려 있어 기업에 실무적 이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찰자가 사전협의를 통해 신고에 필요한 특정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거나 EU 집행위의 검토가 불필요한 사유를 적절히 설명하는 경우, EU 집행위는 해당 정보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IV. EU 집행위의 권한

EU 집행위는 정보 요청서(RFI) 발송, 인터뷰, 현장조사(dawn raid)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업이 요청받은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지 않거나 불완전·부정확한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관련 기업(undertaking or association of undertakings concerned)의 전년도 매출의 1%를 상한으로 하는 과징금과 일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¹⁴⁾

또한 FSR 신고를 누락하거나 회피하는 경우에는 관련 경제주체(economic operators concerned)의 전년도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¹⁵⁾

한편, 공공조달 관련 신고/직권조사에 대한 EU 집행위의 심사 결과, 시장 왜곡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무이의 결정(no objection)이 내려지며, 시장 왜곡이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자산 매각, 시장 점유율 제한 등 시정조치(redressive measures)가 내려지거나, 입찰 금지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V. 결론

FSR 도입으로 우리 기업들은 EU 역내 공공조달 참여 시 추가적인 신고와 EU 집행위의 심사를 거쳐야 하게 되었습니다. FSR이 시행된 지 2년이 경과한 현재 신고 건수가 예상을 크게 상회하고 있고 심층조사 및 직권조사가 개시된 사례 역시 속속 발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EU 집행위의 심사 기준과 절차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EU 집행위는 정보 요구, 자료 제출 요구, 직권조사 등 실질적이고 강력한 조사 권한을 바탕으로 규정 위반에 대하여 고액의 과징금 부과 등 여러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사전 협의(pre-notification contact)

12) 단, 시행일 이전에 받은 보조금의 경우, 시행일 기준 5년 전까지의 보조금에 대해서만 조사가 가능합니다.

13) FSR 이행규정 Annex I 5. (8)

14) FSR 제17조

15) FSR 제33조

Yulchon Legal Update

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신고 과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신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어지는 Legal Update에서는 기업결합 사전신고 이후 EU집행위의 검토절차와 검토기준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현재까지의 FSR 시행 경과와 신고·조사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율촌은 역외보조금 및 국제통상규제에 관한 여러 해외 정책들에 대하여 폭넓은 대응 경험과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쟁점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최신 정보와 필요한 자문을 적시에 제공하는 원스탑 서비스를 통해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U 역외보조금 규정과 관련한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